

(수납기관 보관용)				(축산물품질평가원 보관용)				(납입자 보관용)			
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				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통지서				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영수증			
고지번호	년도	월	금액	고지번호	년도	월	금액	고지번호	년도	월	금액
작업장명:		대표자:		작업장명:		대표자:		작업장명:		대표자:	
주 소:				주 소:				주 소:			
납입기한:		년	월 일	납입기한:		년	월 일	납입기한:		년	월 일
납입물량	소: 두, 말: 두, 돼지: 두 닭: 수(kg), 오리: 수(kg) 계란: 개			납입물량	소: 두, 말: 두, 돼지: 두 닭: 수(kg), 오리: 수(kg) 계란: 개			납입물량	소: 두, 말: 두, 돼지: 두 닭: 수(kg), 오리: 수(kg) 계란: 개		
수수료총액				수수료총액				수수료총액			
공 제 액				공 제 액				공 제 액			
납 입 액				납 입 액				납 입 액			
「축산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위의 금액을 고지하니 납입하시기 바랍니다.				위와 같이 수납하였음을 통지합니다.				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.			
년		월	일	년		월	일	년		월	일
축산물품질평가원장 인								축산물품질평가원장 인			
주 : 1. 납입기한이 경과한 경우 이 고지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재발급받아 납입하여야 합니다.				수납기관 :				수납기관 :			
2. 고지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작업장을 담당하는 품질평가사를 경유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				수납인				수납인			
※ 납입장소: 농협, 우체국				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				※ 취급자 날인이 없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.			